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 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감액처리에 대한 설명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감액전	감액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500만원
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	400만원	200만원
감액할 때 지급금액	200만원 (= 400	만원 - 200만원)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 갱신으로 하며,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합니다)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

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제13조(특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③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다만, 주계약 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하며, 주계약이 갱신형보험 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만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갱신된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전 특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 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 2. 제17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3.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주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 ⑥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갱신 시점의 나이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갱신계약의 변경내용 및 보험료 등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⑧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7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 산출기초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 2.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 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⑤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①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이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 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첨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 2.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다만,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해지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3조(특약의 성립) 및 제18조(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제3항에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특약 계약을 청약할 때(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2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2>"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3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	후에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이 외의 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60회 확정지급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 × 60회"를 확정지급함)
	(40, 42 44 004 04 04)	

※ 1년 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 지급예시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5년>

				. –	
	매월	매월		매월	매월
	특약보험	특약보험		특약보험	특약보험
	가입금액	가입금액	•••	가입금액	가입금액
	의 10%	의 10%		의 10%	의 10%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60회 확정지급)				

최초암진단 5년

- ※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를 지급받던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미지급 된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를 매월 지급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이 특약의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2.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이 특약의 "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하며,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이라 함은 "암" 중에서 "여

- 성유방암" 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4.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의 경우 최초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 진단확정일부터 매월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이 외의 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 진단확정일 해당일에 확정 지급하며, 해당월에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봅니다.
- 5.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를 지급받던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미지 급 된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를 매월 지급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6. 이 특약의 "중증 갑상선암"은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 "수질성암 (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중증 이외 갑상선암"이라 함은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 "중증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부표2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제1회의 일반암진단 후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생활비 (제3조)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u>\</u> 3±)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제2회 이후의	「제2회 이후의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 지급해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평균공시이율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 (제3조)	발비 부터 청구일까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이 없게 된 날)의 다음날 이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22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 일까지의 기간	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 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 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신청(다만,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합니다)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⑤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⑦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부표3



별첨2 [표 5-1] 참조

부표4

유방암 분류표



별첨2 [표 8-1] 참조

부표5

전립선암 분류표



별첨2 [표 8-2] 참조

부표6

갑상선암 분류표



별첨2 [표 8-4] 참조

신한두개로OK암보험 일반암진단특약(무배당, 갱신형)







약 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의2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조의3 "중증 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조의4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조의5 "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 등의 발생통지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성립

제14조 특약의 무효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제17조 특약의 소멸